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





산업통상자원부(가스산업과) 044-203-5237 산업통상자원부(에너지안전과) 044-203-3989

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도시가스사업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- 제1조의2(도시가스의 종류) 「도시가스사업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4. 7. 21.>
 - 1. 천연가스(액화한 것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: 지하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가연성 가스로서 메탄을 주성분 으로 하는 가스
 - 2. 천연가스와 일정량을 혼합하거나 이를 대체하여도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의 성능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다음 각 목의 가스 중 배관 (配管)을 통하여 공급되는 가스
 - 가. 석유가스: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및 「석유 및 석유대 체연료 사업법 |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석유가스를 공기와 혼합하여 제조한 가스
 - 나. 나프타부생(副生)가스: 나프타 분해공정을 통해 에틸렌, 프로필렌 등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성 되는 가스로서 메탄이 주성분인 가스 및 이를 다른 도시가스와 혼합하여 제조한 가스
 - 다. 바이오가스: 유기성(有機性) 폐기물 등 바이오매스로부터 생성된 기체를 정제한 가스로서 메탄이 주성분 인 가스 및 이를 다른 도시가스와 혼합하여 제조한 가스
 - 라. 합성천연가스: 석탄을 주원료로 하여 고온・고압의 가스화 공정을 거쳐 생산한 가스로서 메탄이 주성분인 가스 및 이를 다른 도시가스와 혼합하여 제조한 가스
 - 마. 그 밖에 메탄이 주성분인 가스로서 도시가스 수급 안정과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을 위해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

[본조신설 2009. 9. 21.]

제1조의3(주식 또는 지분의 산정 기준) 법 제2조제4호의4 및 제8조의2 전단에서 "주식 또는 지분의 과반수를 소 유한 자"란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한 자를 말한다.

[본조신설 2014, 7, 21.]

[종전 제1조의3은 제1조의4로 이동 <2014. 7. 21.>]

- 제1조의4(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의 용도) 법 제2조제9호에서 "발전용・산업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" 라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.
 - 1. 발전용: 전기(電氣)를 생산하는 용도
 - 2. 산업용: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의 제조공정용 원료 또는 연료(제조부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연료를 포함한다)로 사용하는 용도
 - 3. 열병합용: 전기와 열을 함께 생산하는 용도
 - 4. 열 전용(專用) 설비용: 열만을 생산하는 용도

[본조신설 2014. 2. 11.]

[제1조의3에서 이동 <2014. 7. 21.>]

- **제1조의5(합성천연가스의 처분)** ① 법 제8조의3제3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 - 1.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가 합성천연가스를 제조하였으나 가스배관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에 고장 또는 파손 등의 장애로 자기가 소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
 - 2.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의 가스제조시설·가스배관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 - ②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라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가 합성천연가스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처분해야 한다. <개정 2022. 2. 8.>
 - 1. 가스도매사업자와의 교환
 - 2. 자가소비용직수입자와의 교환

- 3. 다른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와의 교환
- 4.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와의 교환
- ③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는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라 합성천연가스를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한 날부터 7일 이 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4, 7, 21.]

- 제2조(천연가스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) 법 제10조의2제1항 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"이란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<개정 2009, 9, 21.>
 - 1. 성명 및 상호
 - 2. 대표자(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
 - 3.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
 - 4.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소재지 및 규모(천연가스 저장시설이 등록된 전체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합계보다 100분 의 20 미만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
- 제3조(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요건) ①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3. 7. 30., 2020. 8. 5.>
 - 1. 도시가스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개시연도의 천연가스 내수판매계획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출 것
 - 2.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경우에는 사업개시연도의 천연가스 자가소비계획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출 것
 - 3.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개시연도의 천연가스 판매계획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출 것
 - ②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당 사업을 개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다음 각 호의 저장시설을 시설기준으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. <개정 2013. 7. 30., 2020. 8. 5.>
 - 1. 도시가스사업자의 경우에는 전년도 천연가스 내수판매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 섴
 - 2.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경우에는 전년도 천연가스 자가소비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 장시설
 - 3.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의 경우에는 전년도 천연가스 판매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 시설
 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저장시설은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소유하거나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를 말한다. 이 경우 저장시설을 여러 사용자가 공동 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하되. 해당 저장시설의 총용량은 각 사용자의 사용용량을 모두 합한 것보다 많아야 한다.
- 제3조의2(천연가스반출입업의 변경신고 대상) ① 법 제10조의2제3항 후단에서 "천연가스 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 - 1. 성명 및 상호
 - 2. 대표자(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
 - 3.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 - 4.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규모(신고한 전체 천연가스 저장시설 규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그 규모를 변경하 는 경우는 제외한다)
 - ② 제1항제4호에서 "천연가스 저장시설"이란 천연가스반출입업의 신고를 한 자가 직접 소유하거나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를 말한다.

[본조신설 2014. 7. 21.]

제4조 삭제 <2015. 6. 30.>

제5조(천연가스의 수입 등 신고대상) 법 제10조의5제2항 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"이란 6만톤 이하인 천연가스의 수입계약과 이에 따른 수송계약을 말한다.

[전문개정 2015. 6. 30.]

- 제6조(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의 처분) ① 법 제10조의6제1항 단서에서 "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 - 1.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가스제조시설・가스배관시설・가스사용시설에 고장 또는 파손 등의 장애가 발생하여

수입한 천연가스의 자가소비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

- 2.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폐업ㆍ파산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
- 3.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가스제조시설·가스배관시설·가스사용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② 법 제10조의6제1항 단서에 따라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천연가스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해야 한다. <개정 2014. 7. 21., 2022. 2. 8.>
- 1. 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한 판매
- 2. 가스도매사업자와의 교환
- 3. 다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와의 교환
- 4.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와의 교환
- 5.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와의 교환
- ③ 제2항에 따라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천연가스를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- ④ 제2항제1호에 따른 판매의 경우 가스도매사업자는 구매조건을 미리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. 신고한 구매조건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13. 3, 23.>
- 제6조의2(증발가스의 처분) ① 법 제10조의6제3항 단서에 따라 천연가스반출입업자가 가스공급시설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증발가스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.
 - 1.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판매
 - 2.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교환
 - ② 제1항에서 "가스공급시설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증발가스"란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에 보관 중인 액화천연가 스가 자연적으로 기화(氣化)되어 발생한 메탄이 주성분인 가스를 말한다.
 - ③ 천연가스반출입업자는 제1항에 따라 증발가스를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4. 7. 21.]

- **제6조의3(천연가스 비축의무량)** ① 법 제10조의10제1항에 따라 가스도매사업자가 비축하여야 하는 천연가스의 양 은 해당 월의 전전월부터 최근 24개월(산정기간이 24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말한다) 중 동절기 또 는 하절기에 속하는 월 동안의 내수판매량의 일평균 판매량의 30일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(이하 "천연가스 비축의무량"이라 한다)으로 한다.
 - ② 제1항에서 동절기 또는 하절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 - 1. 동절기: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
 - 2. 하절기: 4월부터 9월까지
 -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천연가스 비축의무 량을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 - 1. 국제 천연가스 시장 상황 및 외환 사정의 악화 등 국내외 경제 여건의 급격한 변동으로 가스도매사업자의 사업 여건이 크게 악화된 경우
 - 2. 천재지변, 화재 또는 그 밖의 재해로 가스도매사업자의 사업용 자산(임차자산을 포함한다)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
 - 3. 국내 천연가스 가격안정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
 - 4. 천연가스 비축량의 급증으로 가스도매사업자에게 과중한 자금 부담이 발생한 경우

[본조신설 2016, 8, 11.]

- **제6조의4(천연가스 비축의무의 이행방법 등)** ① 가스도매사업자는 해당 월의 일평균 천연가스 재고량을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이상으로 유지하여 법 제10조의10제1항에 따른 천연가스 비축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천연가스 재고량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선박 내에 있는 물량(통관되지 않은 물량을 포함 한다)을 합산하여 산정한다. 다만, 제1호의 저장설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재고량 으로서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 물량은 제외한다. <개정 2021, 8, 31.>
 - 1. 가스제조시설의 저장설비
 - 2. 가스도매사업자가 소유 또는 이용하고 있는 배관시설
 - 3. 국내의 전용항구에서 하역 중이거나 하역대기 중인 천연가스 수송선
 - ③ 가스도매사업자는 해당 월의 천연가스 비축의무 이행 여부를 다음 달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6. 8. 11.]

- 제6조의5(비축 천연가스의 사용 등) ① 가스도매사업자는 법 제10조의10제2항에 따라 제6조의3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축한 천연가스를 사용할 수 있다.
 - ② 가스도매사업자는 비축한 천연가스를 사용한 경우 즉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③ 제1항에 따라 비축한 천연가스를 사용한 가스도매사업자는 비축한 천연가스를 사용한 달의 다음다음 달 1일 까지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이상의 천연가스를 비축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6. 8. 11.]

- 제6조의6(천연가스 비축의무의 감면) ① 법 제10조의10제3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"란 해당 가스전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7일 이내에 수입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.
 - ② 가스도매사업자는 법 제10조의10제3항에 따라 천연가스 비축의무를 면제 또는 감경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1. 천연가스 비축의무를 면제 또는 감경받으려는 7일 이내의 기간
 - 2. 제1호에 따른 기간 내에 수입할 수 있는 천연가스의 양
 - 3. 제2호에 따른 천연가스의 양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
 -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확인하여 7일 이내의 기간에 수입할 수 있는 천연가스 의 양을 해당 기간 동안 천연가스 비축의무량에서 제외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6. 8. 11.]

- 제6조의7(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변경등록 대상) 법 제10조의11제1항 후단에서 "천연가스 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 - 1. 성명 및 상호
 - 2. 대표자(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
 - 3.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 - 4.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소재지 및 규모(천연가스 저장시설이 등록된 전체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합계보다 100분 의 20 미만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

[본조신설 2020. 8. 5.]

- 제6조의8(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요건) 법 제10조의11제2항에 따른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 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출 것
 - 가. 저장탱크
 - 나.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
 - 다. 천연가스공급선
 - 2.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출 것

[본조신설 2020, 8, 5.]

- 제6조의9(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변경등록 대상) 법 제10조의11제3항 후단에서 "천연가스 저 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 - 1. 성명 및 상호
 - 2. 대표자(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
 - 3.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 - 4.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소재지 및 규모(천연가스 저장시설이 등록된 전체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합계보다 100분 의 20 미만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

[본조신설 2020. 8. 5.]

- 제6조의10(건조한 선박 내 잔존 천연가스의 인도) 법 제10조의11제4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 - 1. 천연가스를 운반하기 위한 선박을 건조한 자
 - 2.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을 건조한 자

[본조신설 2020. 8. 5.]

제6조의11(증발가스의 처분) ① 법 제10조의14제1항 단서에 따라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 운영과정 에서 발생한 증발가스[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에 보관 중인 액화천연가스가 자연적으로 기화(氣化)되어 발생한 메탄이 주성분인 가스를 말한다]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해야 하다.

- 1. 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한 판매
- 2. 가스도매사업자와의 교환
- 3. 자가소비용직수입자와의 교환
- ②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증발가스를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.

[본조신설 2020. 8. 5.]

- 제6조의12(선박용천연가스의 처분) ① 법 제10조의14제2항에서 "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천연가스의 긴급한 수급안 정과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천연가스의 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 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 - 1.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의 폐업ㆍ파산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
 - 선박용처연가스사업자의 가스제조시설·가스배관시설·가스사용시설의 효율적 유영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 - ② 법 제10조의14제2항에 따라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천연가스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해야 한다. <개정 2022. 2. 8.>
 - 1. 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한 판매
 - 2. 가스도매사업자와의 교환
 - 3. 자가소비용직수입자와의 교환
 - 4.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와의 교환
 - ③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천연가스를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.
 - ④ 제2항제1호에 따른 판매의 경우 가스도매사업자는 구매조건을 미리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해 야 한다. 신고한 구매조건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[본조신설 2020. 8. 5.]

- 제7조(가스공급시설의 임시사용)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・시장・군수・구청장(구청장은 자치구 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"시장·군수·구청장"이라 한다)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을 임시로 사 용하게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 - 1. 도시가스의 공급이 가능한지 여부
 - 2. 가스공급시설을 사용할 때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
 - 3. 도시가스의 수급 상태를 고려할 때 해당 지역에 도시가스의 공급이 필요한지 여부
- 제8조(정기검사의 면제대상)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를 말한다.
 - 1. 최근 2년간 법 제17조에 따른 정기검사(이하 이 조에서 "정기검사"라 한다)의 수검실적 및 법 제26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상태가 우수하여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(이하"한국가 스안전공사"라 한다)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연도에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도 안전에 지장 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
 - 2.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연도에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자
- 제9조(상세기준의 승인)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법 제17조의5제2항에 따라 상세기준을 심의 · 의결하였을 때에는 그 심의 · 의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세기준 승인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, 3, 23, 2014, 2, 11, 2017, 12, 29,>
 - 1. 상세기준 제정 또는 개정 이유
 - 2.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 경과 및 결과
 - 3.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회의록
- 제9조의2(가스공급의무의 면제) 법 제19조제3항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14. 2. 11.>
 - 1.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지역이 개인 소유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가스공급시설 의 설치를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
 - 2.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하는 지역이 가스공급시설 끝 부분의 배관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끝 부분의 배관에서 측정한 도시가스압력이 1킬로파스칼부터 2.5킬로파스칼까지의 범위를 유지하지 못하여 불완전한 도시가스 공 급이 발생하는 경우

[본조신설 2010. 7. 26.]

제10조 삭제 <2010. 7. 26.>

- **제11조(도시가스 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조치)**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 공 급량 측정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시장・광역시장・특별자치시장・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・도지사"라 한다)가 정하여 고시한 보정계수(補正係數)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급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 9. 21., 2010. 7. 26., 2014. 2. 11.>
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스사용자가 도시가스의 온도와 압력을 보정하는 장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요건을 갖춘 장치(이하 "온압보정장치"라 한다)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자에 대하여 온 압보정장치로 측정된 도시가스 공급량을 적용한다. <개정 2009. 9. 21.>
 - 1. 「산업표준화법」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것
 - 2. 「계량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아 제조된 것으로서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것
 -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온압보정장치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최초 설치 후 일정기 간마다 제품의 성능에 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09. 9. 21., 2013. 3. 23.> [제목개정 2009. 9. 21.]
- 제12조(시정명령의 방법과 절차) ① 시・도지사가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때에는 해당 일반도시가 스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1년 이내의 개선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·도지사에게 시정명령에 대한 개선계획 서를 제출하고, 개선기간 내에 명령받은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기 10일 전까지 시 ·도지사에게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시·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그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- 제12조의2(도시가스의 품질검사) 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가스 품질검사기관"이란 한국 가스안전공사를 말한다.

[본조신설 2012. 1. 17.]

- 제13조(가스시설의 개선기간 등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가스 시설의 수리·개선·이전명령 또는 도시가스의 공급중지 등 위해방지조치 명령을 하려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가스시설의 수리・개선 등에 필요한 기간(이하 이 조에서 "개선기간"이라 한다)을 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 9. 21.. 2013. 3. 23.>
 -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개선기간 이내에 명령받은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에게 6개월 이 내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,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3. 23.>
- 제14조(손실보상) ①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른 손실보상을 할 때 보상금액과 그 밖에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이 손실을 받은 도시가스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 - ②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이 손실보상을 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 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해당 도시가스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재정을 신 청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3. 23.>
 -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받으면 다른 당사자에게 이를 알리고, 기간을 정하여 의견 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 -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받으면 보상금액과 그 밖에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. <개정 2013, 3, 23.>
- **제14조의2(공사계획의 통보가 필요 없는 건축물 공사)** 법 제28조의3제1항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"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.
 - 1. 건축물 공사의 시행자가 도시가스 사용자 및 도시가스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도시가스배관에 대한 안전조 치를 한 건축물 공사
 - 2. 건축물 일부[벽, 기둥, 바닥, 보 또는 지붕틀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 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)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의 철거 작업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증축 • 대수선 공사

- 3. 건축물 일부의 철거 작업이 수반되는 건축물의 증축·개축·대수선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 춘 공사
 - 가. 철거 부분에 도시가스배관이 없거나 도시가스공급이 없을 것
 - 나. 주변 가스배관시설의 손상 우려가 없을 것

[본조신설 2015, 6, 30,]

제15조(안전관리자의 종류 및 자격 등) ①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안전관리 총괄자
- 2. 안전관리 부총괄자
- 3. 안전관리 책임자
- 4. 안전관리워
- 5. 안전점검원
- ② 안전관리 총괄자는 도시가스사업자(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),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(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)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(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)로 하며, 안전관리 부총괄자는 해당 가스공급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최고책임자로 한다.
- ③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은 별표 1과 같다.

제16조(안전관리자의 업무) ①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<개정 2010. 7. 26., 2014. 2. 11.>

- 1. 가스공급시설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유지
- 2. 법 제17조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의 개선
- 3. 법 제19조의4에 따른 안전점검의무의 이행확인
- 4.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실시기록의 작성 · 보존
- 5. 종업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지휘·감독
- 6. 정압기·도시가스배관 및 그 부속설비의 순회점검, 구조물의 관리, 원격감시시스템의 관리, 검사업무 및 안전 에 대한 비상계획의 수립 · 관리
- 7. 본관·공급관의 누출검사 및 전기방식시설의 관리
- 8. 사용자 공급관의 관리
- 9. 공급시설 및 사용시설의 굴착공사의 관리
- 10. 배관의 구멍 뚫기 작업
- 11. 그 밖의 위해 방지 조치
- ② 삭제 <2010. 7. 26.>
- ③ 안전관리 책임자, 안전관리원 및 안전점검원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각 호
- 의 직무 외의 다른 일을 맡아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10. 7. 26.>
- ④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. <개정 2010. 7. 26.>
- 1. 안전관리 총괄자: 가스공급시설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에 관한 업무의 총괄 관리
- 2. 안전관리 부총괄자: 안전관리 총괄자를 보좌하여 해당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에 대한 직접 관리
- 3. 안전관리 책임자: 안전관리 부총괄자(특정가스사용시설의 경우에는 안전관리 총괄자)를 보좌하여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의 관리 및 안전관리원 또는 안전점검원에 대한 지휘ㆍ감독
- 4. 안전관리원: 안전관리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하고 안전점검원을 지휘·감독
- 5. 안전점검원: 안전관리 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원의 지시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직무 수행
- ⑤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5. 29.>
- 1. 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: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30일 이내의 기간
- 2. 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: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의 기간
- ⑥ 법 제29조제3항과 이 조 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른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 9. 21., 2010. 7. 26., 2017. 5. 29.>
- 1. 안전관리 총괄자 및 안전관리 부총괄자의 직무대행: 각각 그를 직접 보좌하는 직무를 하는 자
- 2. 안전관리 책임자의 직무대행: 안전관리원. 다만, 별표 1에 따라 안전관리원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설 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으로서 도시가스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.
- 3. 안전관리원의 직무대행: 안전점검원. 다만, 별표 1에 따라 안전점검원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설의 경 우에는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으로서 도시가스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지식

- 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.
- 4. 안전점검원의 직무대행: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으로서 도시가스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가스안전 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
- 제17조(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이 필요 없는 공사) 법 제30조의3제1항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 사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. <개정 2009. 9. 21., 2013. 3. 23.>
 - 1.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수작업으로 하는 굴착공사
 - 2. 「농지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에서 경작을 위하여 하는 깊이 450밀리미터 미만의 굴착공사
 - 3. 도시가스사업자가 법 제30조의2에 따른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로부터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을 통보받고 그 도시가스배관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작업으로 하는 굴착공사
 - 4.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도시가스배관 파손사고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굴착공사 [제목개정 2009. 9. 21.]
- 제18조(가스안전 영향평가)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가스안전 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도시가스배관이 통과하는 지점에서 도시철도(지하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한다)・지하보도・지하차 도 또는 지하상가의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로 한다. <개정 2009. 9. 21., 2013. 3. 23.>
- 제19조(준용규정)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에 관하여는 제8조,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, 제20조제1 항제1호・제2호, 제6호부터 제8호까지, 같은 조 제2항, 제23조제2항, 제24조 및 제25조를 준용한다.
- 제20조(조정명령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정명령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09. 9. 21., 2013. 3. 23., 2014. 2. 11.>
 - 1.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의 조정
 - 2. 가스공급계획의 조정
 - 3. 둘 이상의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를 공급지역으로 하는 경우 공급지역의 조정
 - 4. 도시가스 요금 등 공급조건의 조정
 - 5. 도시가스의 열량 · 압력 및 연소성의 조정
 - 6.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에 관한 조정
 - 7. 천연가스 수출입 물량의 규모 · 시기 등의 조정
 - 8. 삭제 <2022. 2. 8.>
 -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정명령을 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시·도 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 -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. <신설 2022. 2. 8.>
 - 1.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의 조정
 - 2. 가스공급시설 공동이용에 관한 조정
 - 3. 천연가스의 수출입 물량의 규모·시기 등의 조정
 - 4. 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한 판매·교환에 관한 조정
 - 5.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와의 교환에 관한 조정
 -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 각 호의 조정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<신설 2022. 2. 8.>
 -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법 제4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스공급권역의 조정 및 사업의 통 폐합을 명할 때에는 미리 해당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22. 2. 8.>
- 제21조(면적 및 기간) 시·도지사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가스공급권역의 조정 및 사업의 통폐합을 명할 수 있 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다.
 - 1. 법 제40조제3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지정되거나 변경된 지역의 면적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 사업의 허가를 받은 공급권역의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
 - 2. 법 제3조제2항 전단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 후 20년이 지난 경우
- 제22조(지도・감독)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0조의3에 따라 시・도지사 또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13, 3, 23, 2016, 12, 27,>
 - 1. 가스안전관리업무수행에 관한 조언 · 권고 또는 지도
 - 2. 가스안전관리업무 처리의 기준·절차의 제정·통보
 - 3.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스시설의 검사에 관한 지시

- 4. 가스안전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한 특별안전관리에 관한 지시
- 5. 가스안전관리업무를 게을리하여 공공의 안전을 해치거나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이 행에 관한 지시
- 6. 그 밖에 가스안전관리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그 조치에 관한 지시

제23조(보고) ① 법 제4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시・도지사 및 시장・군수・구청장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0. 7. 26., 2013. 3. 23.>

- 1. 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현황
- 2.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 및 휴업 · 폐업에 관한 현황
- 3. 법 제9조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취소, 사업정지 또는 제한명령에 관한 현황
- 4. 법 제10조에 따라 시·도지사가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한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한 현황
- 5.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시·도지사가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한 가스공급권역의 조정, 사업의 통폐합 명령에 관 하 현황
- ② 법 제4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 다. <개정 2013. 7. 30., 2014. 7. 21., 2022. 2. 8.>
- 1. 제20조에 따른 조정명령의 이행에 관한 사항
- 2. 액화천연가스를 하역·저장·기화하여 배관망으로 송출하는 시설에 인접한 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 또는 실 적이 있는 경우 해당 계획 및 실적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- 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경우 해당 구매조건(보고한 구매조건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구매조건을 포함한다)에 관한 사항
 - 가.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가스도매사업자가 나프타부생가스・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로부터 나프타부생가 스 · 바이오가스를 공급받는 경우
 - 나.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가스도매사업자가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로부터 합성천연가스를 공급받는 경
 - 다. 법 제10조의6제1항에 따라 가스도매사업자가 자가소비용직수입자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경우
 - 라. 법 제10조의6제3항 본문에 따라 가스도매사업자가 천연가스반출입업자로부터 「관세법」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내에 반입한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경우
 - 마, 법 제10조의14제2항에 따라 가스도매사업자가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경우
- ③ 법 제4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 다. <신설 2022. 2. 8.>
- 1. 법 제39조의4에 따른 가스수급계획의 이행실적 및 관련 현황에 관한 사항
- 2.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의 이행에 관한 사항
- 3. 천연가스의 수입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
- 4.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이용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
- 5. 제1조의4 각 호의 용도별 사용실적
- 6. 자가소비 외 천연가스 처분 현황 및 관련 비용. 이 경우 천연가스 처분 현황은 제6조제2항 각 호의 방법별로 구분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고, 관련 비용의 보고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조정명령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.
- ④ 법 제4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 다. <신설 2020. 8. 5., 2022. 2. 8.>
- 1. 천연가스의 수출입·판매·교환 물량 등 수급실적에 관한 사항
- 2. 선박용천연가스사업 관련 시설의 이용현황에 관한 사항
- 3. 법 제10조의14에 따른 천연가스 처분 현황. 이 경우 제6조의12 각 호의 방법별로 구분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.

제24조(보험의 종류 등) ① 법 제43조에 따른 보험의 종류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 된 보험으로 한다.

- ② 법 제43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금액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- ③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험의 가입 절차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도시가스사고 예방사업 수행자에 대한 지원 방법 •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- 제25조(안전관리투자 권고대상 등) 법 제43조의3에서 "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가스사업자"란 최근 3년 간의 안전관리를 위한 투자액이 사업개시연도, 시설규모 및 매출액 등이 유사한 다른 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관

리를 위한 통상 투자액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도시가스사업자를 말한다.

- 제26조(권한의 위임·위탁 등)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시·도지사는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가스배관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사용 허가에 관한 권한을 시장・군수・구청장에게 위임한다. <개정 2014. 2. 11.>
 -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권한 (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)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한다. <개정 2010. 7. 26., 2013. 3. 23.>
 - 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 중 산업통상자 원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에 관한 권한을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「고압가스 안전관리 법」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에 위탁한다. 이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하는 권한과 검사기관에 위탁하는 권한의 구분은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 <개정 2010. 7. 26., 2013. 3. 23.>
- 제26조의2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(해당 권한이 위임·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·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 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 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 <개정 2022. 2. 8.>
 - 1. 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한 사무
 - 2. 법 제7조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지위의 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
 - 3. 법 제10조의2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, 천연가스반출입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
 - 4. 법 제10조의3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의 조건부 등록에 관한 사무
 - 5. 법 제10조의5에 따른 천연가스의 수입계약・수출계약・수송계약의 승인, 변경승인, 신고 및 변경신고, 천연가 스의 반입계약 · 반출계약 · 수송계약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
 - 6. 법 제10조의11에 따른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
 - 7. 법 제10조의13에 따른 선박용천연가스의 수입계약・수출계약・수송계약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
 - 8. 법 제11조에 따른 시설공사계획의 승인, 변경승인,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
 - 9. 법 제11조의2에 따른 비상공급시설 설치의 신고에 관한 사무
 - 10. 법 제16조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임시사용에 관한 사무
 - 11. 법 제17조(법 제39조의5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에 관한 사무
 - 12. 법 제20조에 따른 공급규정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사무
 - 13.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. 해임 및 퇴직의 신고에 관한 사무
 - 14. 법 제30조에 따른 안전교육에 관한 사무
 - ② 가스도매사업자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따른 유전정보,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 - 1.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공급규정에 따른 도시 가스 요금의 감면에 관한 사무
 - 2.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시・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공급규정에 따른 연체요금에 대한 청구・관리 사무
 - ③ 가스도매사업자 중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이 제2항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 요금 의 감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 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사용료를 면제한다.

[본조신설 2015. 8. 19.]

[종전 제26조의2는 제26조의3으로 이동 <2015. 8. 19.>]

- 제26조의3(규제의 재검토)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 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)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- 1. 제3조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요건: 2014년 1월 1일
 - 2. 제2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: 2015년 1월 1일

[전문개정 2014. 7. 21.]

[제26조의2에서 이동 <2015. 8. 19.>]

제27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5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
[전문개정 2011. 4. 5.]

부칙 <제32868호, 2022. 8. 9.> (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)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11 / 11 -